

# 『미국, PFHxS 나트륨염의 독성물질 배출목록(TRI) 추가 및 규정 반영』

2026. 04. 01.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29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075,137 (2025)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퍼플루오로헥산설폰산 나트륨염(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PFHxS 나트륨염)\*이 독성물질 배출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 TRI)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기존 규정\*\*에 반영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계열에 속하는 화학물질로,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생물체와 인체에 축적될 수 있어 장기적 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

\*\* 40 CFR Part 372(독성 화학물질 배출 보고·지역사회 알 권리)<sup>1)</sup>

- (적용범위) HS 코드 - 29\*

\* 유기화학품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PFHxS 나트륨염이 TRI 보고 대상 화학물질로 자동 추가됨에 따라, 이를 40 CFR § 372.65에 반영하고 제조·가공·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적용됨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중국) 「중점 통제 신오염물질 목록<sup>2)</sup>」을 통해 PFHxS 및 그 염류·관련 화합물을 포함한 PFAS를 물질군 단위로 규제하며, 생산·가공·사용·수출입 금지와 폐기 시 위험폐기물 기준 적용 등 강한 제한 조치를 시행함
-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sup>3)</sup>」에 따라 PFHxS 및 그 염류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제조·수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제품의 수입도 제한함
- (EU) REACH\* 및 POPs 규정\*\*을 통해 PFHxS 및 그 염류·관련 화합물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제조·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모든 용도에서 사용을 제한함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Regula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Regulation)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동 규제는 미국 내 시설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제로,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미국 거래처의 성분 정보 제공 요청 등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권고사항) 국내 수출기업은 PFHxS 나트륨염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거래처의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미국 수입자 또는 고객사가 TRI 보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PFHxS 나트륨염 포함 여부 및 함량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성분표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제공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수출 제품 내 PFHxS 나트륨염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본 성분 정보를 정리하여 거래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PFAS 관련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물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고객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 <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J/part-372>

2) [https://www.mee.gov.cn/gzk/gz/202212/t20221230\\_1009192.shtml](https://www.mee.gov.cn/gzk/gz/202212/t20221230_1009192.shtml)

3)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1128\\_002.html](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1128_002.html)

# 목 차

요약문 .....	1
I. 규제 개요 .....	2
II. 규제 세부 내용 .....	3
III. 관련 인증 정보 .....	5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6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6
2.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	8
V.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9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9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10
VI. 대응 방안 .....	11
참고 1 참고자료 .....	12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	13

## 요 약 문

<b>규제명</b>	<b>영문</b>	Implementing Statutory Addition of Certain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to the Toxics Release Inventory Beginning With Reporting Year 2026	
	<b>국문</b>	2026년 보고 연도부터 유독물질 배출 목록에 특정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의 법정 추가 시행	
<b>WTO/TBT 통보문 번호</b>	USA/2264	<b>통보국</b>	미국
<b>채택(예정)일</b>	2026. 03. 30	<b>시행현황</b>	개정 최종안
<b>시행(예정)일</b>	2026. 03. 30	<b>통보일(고시일)</b>	2026. 03. 02
<b>HS Code</b>	29	<b>의견수렴 마감일</b>	의견수렴 미진행
<b>총 수출액 (천불)</b>	18,967,732 천불 (2025년 기준)	<b>對별행국 수출액 (천불)</b>	1,075,137 천불 (2025년 기준)
<b>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b>	미대상		
<b>규제 주요 내용</b>	<b>해당 부처</b>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b>규제 목적</b>	PFHxS 나트륨염의 배출·사용 관리를 통한 인체 및 환경 위해 최소화	
	<b>주요 내용</b>	PFHxS 나트륨염이 TRI 보고 대상 화학물질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물질을 40 CFR §372.65에 반영하고 제조·가공·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적용함	
<b>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b>	동 규제는 미국 내 시설에 적용되는 보고 규제로, 국내 수출기업에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성분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b>대응 여부</b>	<b>예상 기업 애로</b>	미국 수입자의 TRI 대응을 위한 성분 정보 요청으로 자료 제공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b>대응 방안</b>	PFHxS 포함 여부 및 성분 정보를 사전에 정리하고, PFAS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1

##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PFHxS 나트륨염이 독성물질 배출목록(TRI) 보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배출 및 취급 정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미국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7321조를 통해 PFAS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PFAS를 TRI에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함
  - \* 독성값 확정, 중요 신규 사용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 SNUR) 지정, 기존 SNUR 리스트에 추가, 독성물질규제법 인벤토리에 신규 등재 또는 활성 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 이에 따라 PFHxS 및 그 염류에 대한 독성값이 확정되면서 자동 추가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PFHxS 나트륨염이 TRI 보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EPA는 이를 기존 규정(40 CFR Part 372)에 반영하기 위해 동 최종 규칙을 마련함

### □ 규제 요지

- 동 규칙은 PFHxS 나트륨염을 40 CFR Part 372에 반영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가공·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기존 독성물질 배출 보고 의무가 적용되도록 함

### □ 적용대상

- (HS 코드: 29) 유기화학품

### □ 시행일

-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

## 2

## 규제 세부 내용

### □ 적용제품

- (HS 코드: 29) 유기화학품

### □ 규제 준수 대상

- 동 규칙은 미국 내에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가공·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2026 보고연도부터 특정 PFAS를 독성물질 배출목록(TRI)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시행

보충 정보:

#### I. 일반 정보

##### A. 이 조치가 나에게 적용되는가?

귀하가 이 규칙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또는 그 밖에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이 조치의 영향을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 코드로 식별되는 사업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다음 NAICS 제조 코드에 포함되는 시설(표준산업분류(SIC) 코드 20부터 39에 해당): 311\*, 312\*, 313\*, 314\*, 315\*, 316,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9\*, 111998\*, 113310, 211130\*, 212323\*, 212390\*, 488390\*, 512230\*, 512250\*, 5131\*, 516210\*, 519290\*, 541713\*, 541715\* 또는 811490\*.

\*이들 NAICS 코드에는 규정(40 CFR 372.23)에 명시된 예외 및/또는 제한이 존재한다.

(:)

### □ 세부내용

- (TRI 목록 반영) PFHxS 나트륨염이 TRI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40 CFR § 372.65에 반영하여 보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함
  - 해당 물질은 화학물질명 기준 목록(Table 4) 및 CAS 번호 기준 목록(Table 5)에 각각 반영함
  -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2026년 보고연도부터 TRI 보고 대상에 적용되고, 보고서는 2027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PART 372—독성 화학물질 배출 보고: 지역사회 알 권리**

■ 1. 권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권한: 42 U.S.C. 11023 및 11048

■ 2. § 372.6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d)항 표 4에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항목을 알파벳 순으로 추가한다.

■ b. (e)항 표 5에 "82382-12-5" 항목을 숫자 순으로 추가한다.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72.65 이 파트가 적용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범주

(d)항 표 4

화학물질명	CASRN <sup>1</sup>	시행일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82382-12-5	2026년 1월 1일

1 CASRN은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를 의미한다.

(e)항 표 5

CASRN <sup>1</sup>	화학물질명	시행일
82382-12-5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2026년 1월 1일

1 CASRN은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를 의미한다.

○ (보고 의무) PFHxS 나트륨염을 일정 기준 이상 제조·가공·사용하는 시설은 TRI 보고서(Form R)를 통해 연간 배출량 및 취급량을 EPA에 보고해야 함\*

- PFHxS 나트륨염은 PFAS 계열 물질로서 특별 관심 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de minimis(소형)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TRI 보고 요건(Form R 제출 등)이 적용됨

- 보고 의무는 제조, 가공, 기타 사용 등 활동별 기준에 적용되며, PFHxS 나트륨염은 특별 관심 화학물질에 해당하여 각 활동에서 100 파운드 (약 45.36 kg)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됨

- 보고 내용에는 환경으로의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의 배출량, 폐기물의 외부 이전 및 처리 방식, 재활용 여부, 화학물질의 제조·가공·사용 등 활동 정보, 최대 보유량, 시설 및 담당자 정보 등 화학물질의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313 및 40 CFR Part 372.85에 근거하여 작성함

\* 본 규제는 PFHxS 나트륨염이 독성물질 배출목록(TRI)에 추가됨에 따라 배출량 및 취급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별도의 인증 취득, 시험 또는 적합성평가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님. 이에 따라 관련 인증 절차, 사후 관리, 표시사항 등 인증 관련 정보는 '해당사항 없음'

**인증 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후관리**

- 해당사항 없음

**표시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 (인증비용) 해당사항 없음
- (서류 보존기간)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 없음
- (위반 시 제재) 해당사항 없음

**적합성평가 기관**

- 해당사항 없음

## 4

#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중국

- (현행 규정) 중국은 「중점 통제 신오염물질 목록(重点管控新污染物清单)」을 통해 PFHxS 및 그 염류를 포함한 PFAS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에 대해 생산·가공·사용·수출입 금지 등 강한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PFHxS는 염류 및 관련 화합물까지 포함하는 물질군 단위로 규제되며, 폐기 시 위험폐기물 기준에 따라 관리됨
- (도입동향) 중국은 「신오염물질 관리 행동방안」을 기반으로 PFAS 등 신오염물질을 목록화하여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당 물질의 사용·배출 및 관리계획을 심사하고,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승인 제한을 적용하는 등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sup>4)</sup>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중국은 PFHxS뿐 아니라 PFOS, PFOA 등 PFAS 전반을 유사물질군 단위로 묶어 규제하고 있으며, 장쇄 PFCA 등 다른 PFAS 계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임

### 2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CSCL)」에 따라 PFHxS 및 그 염류를 제1종 특정화학물질(Class I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고 관련 제품의 수입도 제한됨

4) [https://www.mee.gov.cn/xxgk/xxgk03/202504/t20250414\\_1114642.html](https://www.mee.gov.cn/xxgk/xxgk03/202504/t20250414_1114642.html)

- **(도입동향)** 일본은 PFHxS 및 관련 물질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5~2026년을 기점으로 제조·수입·사용 금지 및 포함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sup>5)</sup>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일본은 PFHxS뿐 아니라 PFOS, PFOA 등 PFAS 전반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동일한 수준의 금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PFHxS 관련 물질 약 100종 이상을 포함하는 등 PFAS 계열 전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임<sup>6)</sup>

### 3 EU

- **(현행 규정)** 유럽연합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에 따라 PFHxS 및 그 염류와 관련 화합물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POPs Regulation)을 통해 제조·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물질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생물축적성 물질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용도에서 사용이 제한됨
- **(도입동향)** EU는 독일·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으로 제출한 PFAS 전면 제한 제안을 기반으로, PFHxS를 포함한 PFAS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을 중심으로 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임<sup>7)</sup>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EU는 PFHxS뿐 아니라 PFOS, PFOA 등 PFAS를 이미 개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왔으며, 최근에는 개별물질 규제를 넘어 PFAS 전반을 하나의 물질군으로 묶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임

5)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japan-amends-enforcement-order-of-chemical-substances-control-law-pfhxs-to-be-banned-from-production-and-import>

6) <https://www.acquiscompliance.com/blog/japan-pfas-ban-cscl-2025-138-substances/>

7) <https://echa.europa.eu/sv/hot-topics/perfluoroalkyl-chemicals-pfas>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중국	일본	EU	미국
상위 법·프레임(전반)	중점 관리 신오염물질 목록(2023판)	화학물질관리법(CSCL)	POPs Regulation ((EU) 2019/1021) 및 PFHxS 추가 개정((EU) 2023/1608)	유해물질 배출 보고법(EPCRA), 오염방지법(PPA), 국방수권법(NDAA)
주관 기관	생태환경부(MEE) 중심, 공업정보화부·상무부·해관총서·시장감독총국 등	경제산업성(METI)·후생노동성·환경성	유럽위원회(EC), 유럽화학물질청(ECHA), 회원국 시장감시기관	환경보호청(EPA)
규제 대상	PFHxS 및 그 염·관련물질	PFHxS 및 그 염·관련물질 (단계적 확대)	PFHxS 및 그 염·관련물질	PFHxS 나트륨염
규제 성격	생산·가공·사용·수출입 금지 중심	제조·수입 원칙금지, 사용 제한, 지정 제품 수입금지	제조·시장유통·사용 금지 중심, 극미량 비의도 오염만 허용	배출·취급 보고 의무
기업 준수사항	PFHxS류를 생산·가공·사용·수출입하지 말아야 함. 폐기·회수물은 조건 충족 시 유해폐기물 관리 적용	PFHxS 관련 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허가 대상(사실상 금지)이고, 지정 제품은 수입 불가. 일부 제품은 정부 기술기준에 따른 취급 필요	PFHxS 계열이 들어간 물질·혼합물·완제품을 시장에 두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함량이 허용 한도 이하인지 확인 필요	대상 시설은 PFHxS-Na의 제조·가공·기타 사용량과 배출량을 추적해 TRI 보고
표시/라벨 의무	별도 라벨보다 금지·관리 중심	표시보다 수입·취급 규제 중심	함유 제품 시장 유통 금지 및 함량 관리	별도 라벨 의무 없음(보고 중심)
보고/문서 제출	별도 정기보고보다 금지 준수 중심	허가·관리 중심	사전 금지 및 함량 입증 중심	독성물질 배출목록(TRI) 보고 의무
제품 영향	원료뿐 아니라 PFHxS류를 함유한 수출입 전반에 영향	방수·발유 섬유, 금속식각제, 반도체용 식각제·반사방지제·레지스트, 소화기·소화약제·포소화약제 등 지정 품목 영향	물질·혼합물·완제품 전반에 적용, 소방품·코팅·섬유·전자부품류 점검 필요	미국 내 제조시설·가공시설·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영향
규제 특징	금지형: 생산·가공·사용·수출입 차단	허가·수입금지형: 특정 제품군 차단 + 취급기준	시장유통 금지형: POPs 기준으로 가장 강한 편	사후 공개보고형: 직접 금지보다 공급망 정보요구 확대

# 5

##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Implementing Statutory Addition of Certain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to the Toxics Release Inventory Beginning With Reporting Year 2026
관리기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법적근거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통보문서	USA/2264
주요목적	PFHxS 나트륨염의 배출·사용 관리를 통한 인체 및 환경 위해 최소화

####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TRI 보고 의무	PFHxS 나트륨염이 TRI 보고 대상 화학물질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가공·사용하는 시설은 기존 TRI 보고 의무가 적용됨
특별 관심 화학물질 적용	PFHxS 나트륨염은 PFAS로서 특별 관심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de minimis 면제 제외 및 Form R 제출 등 강화된 보고 요건이 적용됨

#### ○ 평가 항목별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동 규제는 PFHxS 나트륨염을 독성물질 배출목록(TRI)에 포함시켜 해당 물질의 배출 및 취급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PFAS 물질의 환경 잔류성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기존 법률(NDAA §7321)에 따른 자동 추가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는 조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비차별성	동 규제는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국 내 해당 물질을 제조·가공·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최소무역 제한성	동 규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취급 시 정보 보고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무역 제한성이 낮으며, 환경·보건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됨
투명성	동 규제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규정 내용, 적용 대상, 시행일 등이 명확히 공개되었으며, 법률(NDAA)에 따른 자동 적용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구분	애로유형 및 파급효과	구체적 발생 원인	영향경로
공급망	성분 정보 제공 부담	미국 수입자 또는 고객사가 TRI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FHxS 나트륨염 포함 여부를 요청할 수 있음	PFHxS 포함 여부 및 함량 확인 필요 → SDS·성분표 등 자료 정리 및 제공 → 대응 업무 증가

○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 영향) 동 규제는 미국 내 시설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제로,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미국 수입업체 및 사용자가 TRI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PFHxS 나트륨염의 포함 여부 및 함량 등에 관한 성분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권고사항) 국내 수출기업은 PFHxS 나트륨염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거래처의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동 규제는 기술표준, 인증 또는 제품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보고 의무 규제로, 자국·수입제품 간 차별, 과도한 무역 제한, 투명성 부족 등 WTO TBT 협정상 주요 무역기술장벽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6

## 대응 방안

### □ 대응방안

####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PFHxS 관련 성분 정보 대응 준비	<b>①</b> 수출 제품 내 PFHxS 나트륨염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SDS 등 기본 성분 정보를 정리하여 거래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b>②</b> PFAS 관련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물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고객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		
대기업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KnowTBT 포털(knowtbt.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KnowTBT 포털(knowtbt.kr)의 상담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 포털(Knowtbt.kr) 접속 → 상담신청)

## 참고 1

## 참고자료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sup>8)</sup>
- EPCRA § 313(42 U.S.C § 11023)<sup>9)</sup>

---

8) <https://www.congress.gov/116/plaws/publ92/PLAW-116publ92.pdf>

9)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2/11023>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28 연방관보 / 제91권, 제39호 /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 규칙 및 규정**

4-(트리플루오로메틸)-1-(6H)-피리다지닐]-페녹시]-아세트산, 유리형 및 결합형이 (a)(2)항의 표 2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a)(2)항의 표 2

농산물	ppm
옥수수, 사료용(필드), 포리지 <sup>1</sup>	0.05
옥수수, 사료용(필드), 스토버 <sup>1</sup>	0.05

주1: 이 허용기준은 2026년 8월 26일에 만료된다.

**§ 180.607 [개정]**

- 13. § 180.60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a)(2)항의 표를 "(a)(2)항의 표 2"로 지정
- b. (b)항 삭제 및 유보
- c. (d)항의 표를 "(d)항의 표 3"으로 지정

**§ 180.637 [개정]**

- 14. § 180.637에서 (b)항을 삭제하고 유보
  - 15. Subpart D에 § 180.1349를 추가
-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0.1349 말레산 히드라지드; 허용기준 면제  
 농약 말레산 히드라지드의 잔류물(대사산물 및 분해산물 포함)이 식물 성장 조절제 또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경우, 허용기준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FR 문서 2026-03942, 2026년 2월 26일 제출; 오전 8:45]

청구 코드 6560-50-P

**환경보호청**

**40 CFR Part 372**

**[EPA-HQ-OPPT-2024-0044; FRL 9427.3-02-OCSPPI]**

**RIN 2070-AL34**

**2026 보고연도부터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에 특정 PFAS 추가를 위한 법률 시행**

기관: 환경보호청(EPA)

조치: 최종 규칙

**요약:**

환경보호청(EPA)은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EPCRA)과 오염방지법(PPA)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 배출 보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갱신한다.

구체적으로, 본 조치는 2019년 12월 20일 제정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 2020 NDAA)에 따라 보고 대상이 되는 퍼플루오로알킬 물질 1종을 규정에 반영한다.

본 조치는 의회의 입법 명령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견수렴 절차는 불필요하다.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주소: 본 조치 관련 문서철(docket)은 EPA-HQ-OPPT-2024-0044로 지정되며 <https://www.regulations.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Daniel R. Ruedy, EPA 독성물질 및 TRI 부서, 전화: (202) 564-7974

**보충 정보:**

**I. 일반 정보**

**A. 이 조치가 나에게 적용되는가?**

귀하가 이 규칙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또는 그 밖에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이 조치의 영향을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로 식별되는 사업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다음 NAICS 제조 코드에 포함되는 시설(표준산업분류(SIC) 코드 20부터 39에 해당): 311\*, 312\*, 313\*, 314\*, 315\*, 316,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9\*, 111998\*, 113310, 211130\*, 212323\*, 212390\*, 488390\*, 512230\*, 512250\*, 5131\*, 516210\*, 519290\*, 541713\*, 541715\* 또는 811490\*.

\*이들 NAICS 코드에는 규정(40 CFR 372.23)에 명시된 예외 및/또는 제한이 존재한다.

- 다음 NAICS 코드에 포함되는 시설(SIC 코드 20부터 39 이외의 SIC 코드에 해당): 211130\*(SIC 코드 1321, 천연가스 액체, 및 SIC 281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무기공업화학 물질에 해당); 또는 212114, 212115, 212220, 212230, 212290\*; 또는 2211\*, 221210\*, 221330(2211\* 및 221210은 상업 유통을 위한 전력 생산 목적으로 석탄 및/또는 석유를 연소하는 시설로 한정됨)(SIC 코드 4911, 4931, 4939, 전기 유틸리티에 해당); 또는 424690, 424710(SIC 코드 5171, 석유 벌크 터미널 및 플랜트에 해당); 425120(이전에 SIC 코드 516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 및 관련 제품으로 분류되었던 시설로 한정됨); 또는 562112(주로 계약 또는 수수료 기준의 용제 회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됨(이전에는 SIC 코드 738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사업 서비스로 분류됨)); 또는 562211\*, 562212\*, 562213\*, 562219\*, 562920(자원보전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제C부, 42 U.S.C. 6921 이하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한정됨)(SIC 코드 4953, 폐기물 시스템에 해당).

\*이들 NAICS 코드에는 예외 및/또는 제한이 존재한다.

EPCRA 제313조에 따라 보고 대상이 되는 시설 유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epa.gov/toxics-releaseinventory-tri-program/tri-coveredindustry-sectors>

. 귀하의 시설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려면, 귀하는 40 CFR part 372, subpart B의 적용 기준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특정 사업체에 대한 이 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항목(위 참조)에 기재된 담당자와 상담하라.

**B.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EPA는 FY-2020 NDAA에 따라 마지막 정합 규칙(90 FR 573; 2025년 1월 6일) (FRL-9427.2-01-OCSP) 이후 EPCRA 제313조 보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보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으로 알려짐)에 추가된 그 1개 화학물질의 추가를 성문화하고 있다.

C.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관의 권한은 무엇인가?

이 조치는 EPCRA 제313조(42 U.S.C. 11001 이하), 오염방지법(PPA) 제6607조(42 U.S.C. 13106), 그리고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 2020 NDAA) 제7321조(Pub. L. 116-92)의 권한에 따라 발령된다.

II. 배경

A. NDAA 제7321조란 무엇인가?

2019년 12월 20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 2020 NDAA)이 법으로 서명되었다. 그 여러 조항 중에서, 제7321(c)는 특정 규제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또는 PFAS 계열을 EPCRA 제313조 보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PFAS 또는 PFAS 계열은 다음 날짜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EPCRA 제313조 보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

- **최종 독성값(Final Toxicity Value):** 관리자가 해당 PFAS 또는 PFAS 계열에 대한 독성값을 최종 확정한 날짜;
- **중요 신규 사용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 관리자가 해당 PFAS 또는 PFAS 계열에 대해 적용 결정(covered determination)을 내린 날짜;
- **기존 중요 신규 사용 규칙에 추가(Addition to Existing Significant New Use Rule):** 해당 PFAS 또는 PFAS 계열이 적용 결정이 적용되는 물질 목록에 추가된 날짜;
- **활성 화학물질로 추가(Addition as an Active Chemical Substance):** 적용 결정이 적용되는 PFAS 또는 PFAS 계열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짜:
  - (1) 독성물질규제법(TSCA) 제8(b)(1)에 따라 공표된 목록(15 U.S.C. 2601 이하)에 추가되고, TSCA 제8(b)(5)(A)에 따라 활성 화학물질로 지정된 경우; 또는
  - (2) TSCA 제8(b)(1)에 따라 공표된 목록에서 TSCA 제8(b)(5)(B)에 따라 활성 화학물질로 지정된 경우.

FY 2020 NDAA는 “적용 결정(covered determination)”을 TSCA 제5(a)(2)에 따라 규칙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PFAS 또는 PFAS 계열의 사용이 중요 신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단, TSCA 제5(a)(3)(B) 또는 제5(a)(3)(C)에 따른 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FY 2020 NDAA 제7321(e)에 따라, EPA는 FY 2020 NDAA 제7321조 (b)(1), (c)(1), 또는 (d)(3)에 따라 목록에 추가되기 전에, 해당 PFAS의 정체가 5 U.S.C. 552(a)에 따른 공개 보호 주장 대상인 경우, 5 U.S.C. 552(b)(4)에 따라 비공개 보호 주장(CBI)을 검토해야 한다.

FY 2020 NDAA에 따라 EPA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공개 보호 주장 검토; 그리고
- 해당 자에게 TSCA 제14(f)(15 U.S.C. 2613(f))에 따라 그 주장을 재확인하고 입증 또는 재입증하도록 요구.

또한, EPA가 PFAS 또는 PFAS 계열의 화학적 정체가 공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PA는 보호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TRI에 해당 PFAS 또는 PFAS 계열을 포함해야 한다.

B. TRI 목록에 추가된 PFAS는 무엇인가?

EPA는 위에서 열거된 기준을 검토한 결과, FY 2020 NDAA 제7321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그 정체가 CBI로 주장되지 않은 화학물질 1종을 확인하였다.

화학물질명 / CASRN	트리거 조치	시행일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82382-12-5)	최종 독성값(참고문헌 1)	2026년 1월 1일

- CASRN은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를 의미한다.

FY 2020 NDAA에 따라, 해당 PFAS가 EPCRA 제313조 보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되는 것은 FY 2020 NDAA 제7321(c)(1)(A)에 명시된 날짜 중 하나 이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PFAS는 2026 보고연도부터 보고 대상이 된다(즉, 보고서는 2027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EPA의 최종 규칙인

“특정 PFAS에 대한 보고 요건 및 공급자 통지 변경; 지역사회 알 권리 독성화학물질 배출 보고; 최종 규칙”

(88 FR 74360, 2023년 10월 31일 (FRL-8741-04-OCSP))에 따라, FY 2020 NDAA 제 7321(b) 및 (c)에 따라 TRI에 추가된 모든 PFAS는 “특별 관심 화학물질”(40 CFR 372.28)로 지정되며, 이는 본 규정에서 식별된 해당 PFAS에도 적용된다.

특별 관심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de minimis 면제에서 제외됨
- Form A(대체 기준 인증서)로 보고할 수 없음
- 보고 범위의 방법 및 시기에 제한이 있음

특별 관심 화학물질 목록에 PFAS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0 CFR 372.28을 참조하라.

### III. 정당한 사유 예외

행정절차법(APA) 제 553(b)(B)(5) U.S.C. 553(b)(B))는, 기관이 공익에 반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PA는 본 규칙을 사전 제안 및 의견수렴 없이 최종 규칙으로 제정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 조치가 의회의 법률에서 정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법률에서 이 화학물질들을 TRI에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PA는 본 규칙의 결과에 대해 재량이 없으며, 본 규칙은 단지 FY 2020 NDAA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 IV. 참고문헌

다음은 본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참조된 문헌 목록이다. 문서철(docket)에는 이러한 문헌뿐만 아니라 EPA가 검토한 기타 정보도 포함되며,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에서 참조된 자료도 포함된다(비록 해당 자료 자체가 문서철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문의처(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1. EPA. 퍼플루오로헥산설폰산(PFHxS, CASRN 355-46-4) 및 관련 염류에 대한 IRIS 독성학적 검토(최종 보고서, 2025). 미국 환경보호청, 워싱턴 DC, EPA/635/R-25/012Fa, 2025. <https://iris.epa.gov/document/&deid=363894>.

### V. 법률 및 행정명령 검토

이들 법률 및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laws-and-executive-orders>

#### A. 행정명령 12866 및 13563

본 조치는 중요한 규제 조치가 아니므로 관리예산처(OMB)에 제출되지 않았다.

#### B. 행정명령 14192

본 조치는 행정명령 12866상 중요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C. 정보수집 부담(PRA)

본 조치는 새로운 정보수집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

OMB는 기존 규정에 포함된 정보수집 활동을 이미 승인하였으며, OMB 통제번호 2070-0212 및 2050-0078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EPCRA 제313조 및 PPA 제6607조에 따른 보고 대상 시설은 TRI PFAS 보고를 위해 EPA 독성화학물질 배출 인벤토리 Form R(EPA Form 9350-1)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PFAS 1종은 다른 특별 관심 화학물질과 동일한 보고 요건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보고 부담 경감 옵션에서 제외된다:

- de minimis 면제
- Form A 사용
- 범위 보고

시설이 하나 이상의 활동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Form R을 작성해야 한다.

응답자는 EPCRA 제322조(42 U.S.C. 11042) 및 40 CFR part 350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의

정체를 영업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

D. 규제 유연성법(RFA)

본 규칙은 RFA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 무자금 명령 개혁법(UMRA)

본 조치는 UMRA에서 정의하는 무자금 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F. 연방주의

본 조치는 연방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 부족(Tribal) 정부 관련

본 조치는 부족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 아동 건강 보호

본 조치는 환경보건 위험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 보고 규칙은 PFAS 정보 수집에 기여하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PFAS 배출 식별에 활용될 수 있다.

I. 에너지 관련 규정

해당 없음.

J. 기술이전법(NTTAA)

기술 표준과 관련 없음.

K. 의회검토법(CRA)

본 조치는 CRA 적용 대상이며, 의회 및 회계감사원에 보고된다.

다만 "주요 규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0 CFR Part 372 수정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알 권리, 보고 및 기록 유지, 독성 화학물질

Lee Zeldin

행정관

따라서, 서문에서 명시된 이유에 따라 EPA는 40 CFR Part 37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372—독성 화학물질 배출 보고: 지역사회 알 권리

■ 1. 권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Authority: 42 U.S.C. 11023 및 11048

■ 2. § 372.65 개정:

■ a. (d)항 표 4에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를 알파벳 순으로 추가

■ b. (e)항 표 5에 "82382-12-5"를 숫자 순으로 추가

§ 372.65 적용 대상 화학물질

(d)항 표 4

화학물질명	CASRN	시행일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82382-12-5	2026년 1월 1일

(e)항 표 5

CASRN	화학물질명	시행일
82382-12-5	Sodium perfluorohexanesulfonate	2026년 1월 1일

[FR 문서 2026-03944, 2026년 2월 26일 제출; 오전 8:45]

청구 코드 6560-50-P